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 정 2007. 5 . 4
개 정 2008. 1. 14
개 정 2008. 5. 28
개 정 2010. 8. 25
개 정 2011. 6. 9(개폐정리)
개 정 2012. 10. 9(개폐정리)
개 정 2013. 4. 30(개폐정리)
개 정 2013. 9. 2(개폐정리)
개 정 2013.10. 18
개 정 2015. 6. 30(개폐정리)
개 정 2015. 9. 23(개폐정리)
개 정 2016. 4. 14(개폐정리)
개 정 2020. 6. 3(개폐정리)
개 정 2020. 9. 9(개폐정리)
개 정 2021. 3. 26
개 정 2022.11. 25
개 정 2023. 6.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폐정리 2015. 6.30><개정 2022.11.25.>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1. 3.26>

제3조(업무)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의 모집, 조사
2.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3. 임원후보자 심사

4. 임원후보자 추천

5. 사장후보자와의 계약안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개폐정리 2012.10.9, 2013.4.30>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령, 정관 및 이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정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4인과 이사회가 선임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0.18.> <개폐정리 2015. 6.30>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 단, 임기만료 2월 이전에 연임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임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구성

2.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구성<개정 2021. 3.26>

③위원회는 임원추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직위 결원이 다수이고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연령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5.><개정 2023. 6.16.>

⑤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11.25.>

⑥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3항 제2호에 따른 노동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2.11.25.>

제5조(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선정) 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폐정리 2015. 6.30>

②제1항 단서의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직책별 대표자 10인으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이하 “대표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③대표자 회의는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2인 이상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그 중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대표자 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별 대표자는 부서장 1인, 팀장 2인 및 팀원 7인으로 구성하며, 각 직책별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부서장 및 팀장은 각 직책별로 후보자를 모집한 후 직책별 직원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 순으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2. 팀원은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자를 대표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 직책의 대표자로 대표자 회의를 구성한다.

③대표자 회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자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가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임명권자에 의거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개폐정리 2015. 6.30>

제8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폐정리 2020. 9. 9>

제9조(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결방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목적 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폐정리 2020. 6. 3>

제11조(임원후보 모집방법) ①위원회는 공사의 성격, 결원 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요건 및 공사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 추천, 공모·추천병행 방식 중에서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사장에 대해서는 공모 또는 공모·추천병행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②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범위는 인재채용, 인재추천, 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제12조(공모에 의한 임원후보 모집) ①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폐정리 2012.10.9, 2013.4.30><개폐정리 2015. 6.30>

②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폐정리 2012.10.9., 2013.4.30., 2016. 4.14>

③공모 또는 공모·추천병행 방식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였으나,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되, 재공고시에는 공모·추천병행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추천에 의한 임원후보 모집) 추천방식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 민간분야 인재추천 업체, 관련 학계

및 단체, 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개폐정리 2016. 4.14>

제13조의 2(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등) 노동이사 임명을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는 공사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소속 근로자 중 2명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5.>

제14조(공모·추천병행 방식에 의한 임원후보 모집) 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추천병행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 방법과 절차 등은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개폐정리 2013.9.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모방식과 추천방식을 병행하는 경우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도 공모에 응모한 사람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응시자에 비해 우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5조(제출서류) 임원후보로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이력서)
2.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3. 직무수행계획서
4. <삭제 2008. 5.28>
5. 기타 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6조(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 ①공사 『정관』 제3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2. 공사 업무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5. 기타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상근감사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근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후단신설 2021. 3.26>

1.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공사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도
4. 기타 외부감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능력 등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상임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1. 공사 업무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2.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3.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4. 기타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비상임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4. 기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

[본조개정 2015. 9.23]

⑥위원회는 임원 선임과 관련된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3. 6.16.>

제17조(심사기준 및 원칙) ①각 임원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1>과 같으며, 위원회는 동 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원후보 응모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특정 응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후보자 추천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응모자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③응모자는 특정 위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④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응모자의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위원회는 임원 후보 응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의 경우 기관특성,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1.14>

②최종 임원후보로 추천될 자는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서류 및 면접심사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하지 못하고, 서류 또는 면접심사 대상자의 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다.

④임원후보 응모자 심사평가는 <별표2>의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제19조(관계인의 출석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임원후보 추천 등) ①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없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② <삭제 2010.8.25>

③임원후보 추천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2. 후보자 추천서(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10.8.25>
3.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서식 제2호)
4. 추천자의 추천서(추천방식 또는 공개·추천방식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한한다) <신설 2010.8.25>
5.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신설 2010.8.25>

④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추천

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 3.26>

⑤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연임되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11.25.>

제21조(사장후보자의 계약안 협의)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장후보자와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폐정리 2012.10.9, 2013.4.30>

제22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①위원회가 응모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모집 절차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직제규정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업무를 담당한다.

③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간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심사자료의 관리) ①위원회는 심사자료를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들의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의 평가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의 공개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안건명, 회의경위,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26, 2023. 6.16.>

제27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심사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9조(규정개정시 조치) 동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장추천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8.25>

이 규정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28>

이 규정은 201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6.9>

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9>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30>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2>

이 규정은 201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18>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23>

이 규정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14>

이 규정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3>

이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9>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6>

이 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 25>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6>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17조 관련) <개정 2013.10.18.> <개정 2015. 9.23>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

1. 사 장

구 분	직무수행요건 및 심사기준
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주택 및 주택금융사업에 대한 비전제시 능력 ○ 공사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발전전략 설정 능력 ○ 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처역량 및 위기관리 능력
나. 공사 업무분야와 관련한 지식 및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경제, 주택 및 주택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주택관련 제도 및 보증시장에 대한 이해 ○ 정부정책 및 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다.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결집 능력 ○ 대규모 공·사 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요구 및 갈등을 융화하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라.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 청렴성, 준법성 등의 윤리의식 ○ 모범적 행동과 솔선수범하는 태도 ○ 부패 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이해와 의지
마. 기타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조정 능력 ○ 공기업으로서 관련 산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독려할 수 있는 협상 능력 ○ 정부, 국회 등의 대외기관 및 고객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관계 능력

2. 상근감사위원

구 분	직무수행요건 및 심사기준
<p>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할 인식 ○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 ○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 ○ 사고예방과 조직의 기강을 높일 수 있는 추진력 ○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성, 통제보고의 양과 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능력 ○ 감사조직의 독립성 유지 및 전문성 제고 능력 ○ 독립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p>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 청렴성, 준법성 등의 윤리의식 ○ 모범적 행동과 솔선수범하는 태도 ○ 부패 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이해와 의지
<p>다. 공사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경제, 주택 및 주택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주택관련 제도 및 보증시장에 대한 이해 ○ 정부정책 및 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 예산, 회계 및 감사업무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
<p>라. 기타 외부감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능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외부감사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 능력 ○ 감사정보의 공유 및 감사인력, 감사실시 등에 대한 협력 활동 수행 능력 ○ 내부감사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능력

3. 상임이사

구 분	직무수행요건 및 심사기준
가. 공사 업무분야와 관련한 지식 및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경제, 주택 및 주택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주택관련 제도 및 보증시장에 대한 이해 ○ 정부정책 및 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비전과 경영계획을 설정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환경변화 예측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전략구상 능력 ○ 솔선수범하는 실행력과 위기관리 능력 ○ 경영혁신을 이끌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및 추진능력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품
라.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 청렴성, 준법성 등의 윤리의식 ○ 모범적 행동과 솔선수범하는 태도 ○ 부패 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이해와 의지
라. 기타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조정 능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독려할 수 있는 협상 능력 ○ 정부, 국회 등의 대외기관 및 고객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관계 능력

4. 비상임이사

구 분	직무수행요건 및 심사기준
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경제, 주택 및 주택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주택관련 제도 및 보증시장에 대한 이해 ○ 정부정책 및 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 청렴성, 준법성 등의 윤리의식 ○ 모범적 행동과 솔선수범하는 태도 ○ 부패 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이해와 의지
다.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할 인식 ○ 이사회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하려는 의지 ○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의지 ○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이행 노력 ○ 공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책임감
라. 기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추진력 ○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 비상임이사 상호간 관계유지와 협력적 업무수행 능력
<p style="text-align: center;"><권장요건></p> <p>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 보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임원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위 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직에 근무한 경력 6.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제외요건></p> <p>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자 3. 공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별표 2> <개정 2013.10.18., 2015. 9.23>

심사평가표

(서류, 면접 심사)

응모직위 : 사장

응모자명 :

심사위원 : (인)

심사항목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20	18	16	14	12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능력	20					
공사 업무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20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20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20					
기타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	20					
합 계	100	점				

※ 평가점수의 해당란에 “√”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심사평가표

(서류, 면접 심사)

응모직위 : 감사위원인 상임이사

응모자명 :

심사위원 : (인)

심사항목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25	23	21	19	17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	25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25					
공사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도	25					
기타 외부감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능력 등	25					
합 계	100	점				

※ 평가점수의 해당란에 “√”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심사평가표

(서류, 면접 심사)

응모직위 : 상임이사

응모자명 :

심사위원 : (인)

심사항목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25	23	21	19	17
공사 업무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25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25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25					
기타 대외업무 추진 능력 등	25					
합 계	100	점				

※ 평가점수의 해당란에 “√”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심사평가표

(서류, 면접 심사)

응모직위 : 비상임이사

응모자명 :

심사위원 : (인)

심사항목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25	23	21	19	17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25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25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25					
기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	25					
합계	100	점				

※ 평가점수의 해당란에 “√”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10.8.25>

후보자 추천서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직위 후보자를 복수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별첨1)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출생	학력	주요경력
○○○ (男)	강원 '○○.○○.○○	○○고 ○○대 ○○학과 ○○대 경제학박사	○○대 경제학과 교수(현) ○○전자 사외이사(현) ○○위원회 자문위원 ○○학회 회장
○○○ (女)	서울 '○○.○○.○○	○○여고 ○○대 영문학과 ○○대 경제학석사	○○일보 편집국장(현) ○○일보 논설위원 ○○일보 경제부장 ○○공사 비상임이사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강원, 서울)

*생년월일은 '○○.○○.○○(예 : '50. 6.25)로 기재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첨2) 세부추천 사유서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100자 내외)

[별지서식 제2호]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간	인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0○.○.○(월)~○.○(금)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0○.○.○)
- 부/처/청/홈페이지(200○.○.○~○.○),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200○.○.○~○.○)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0○.○.○부터 200○.○.○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부/처/청/홈페이지(200○.○.○~○.○),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200○.○.○~○.○)
※ 접수기간 : 200○.○.○부터 200○.○.○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비상임이사				학계
비상임이사				경제계
비상임이사				언론계
이사회추천				노동계
이사회추천				법조계